

양성인권강사 양성특강 2

<인권강사 양성과정 워크북 2>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하고,
모든사람(인권교육연구단체)이 교재개발연구용역을 맡아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권강사 양성과정 워크북 2>의 교재개발 참여자는
모든사람(인권교육연구단체)의 박병은(책임연구), 배우나(연구원), 정가희(연구원)입니다.

표지 및 본문 디자인과 인쇄는 '디자인 모장'이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3층이고,
담당부서는 인권교육운영과이며, 전화는 02-2125-9826입니다.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ISBN 978-89-6114-894-8 94370

978-89-6114-892-4 94370(세트)

※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권을 위한 감사”

인권강사양성과정에 지원하면서 쓴 인권수필이나 자기소개서를 지금 다시 읽어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만약 다시 써본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물론 그 내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생각이 왜 변했는지 또는 변하지 않았는지를 기록하며 인권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은 알면 알수록 변화를 가져옵니다. 익숙한 일들이 다시 보이고, 어떤 말들은 사용할 수 없으며, 무심히 지나친 일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인권을 확대하기보다 멀리하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은 참여자들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이들이 인권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고 실천하는 것이 인권 강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는 인권교육이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단 한 번의 교육이 이러한 역량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 역량은 인권교육과 만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인권교육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다양한 일들을 들여다보고, 인권과 가장 가까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인권교육은 혼자서 하지만, 인권강사는 혼자가 아닙니다. 늘 서로가 인권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워크북은 인권강사 기본과정의 참여자들을 위한
예습서입니다.

「인권강사 양성과정 워크북 2」 제작 목적

- 이 워크북은 인권교육의 의미와 원칙 및 평가 등을 알아 보고, 인권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할과 자세 등을 안내 하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 이 워크북은 인권교육 계획 시 요구되는 교육대상 분석, 목표 설정, 교안 작성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기 위 해 제작하였습니다.
- 이 워크북은 인권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 여,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 해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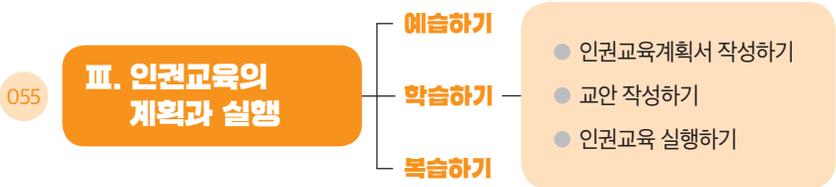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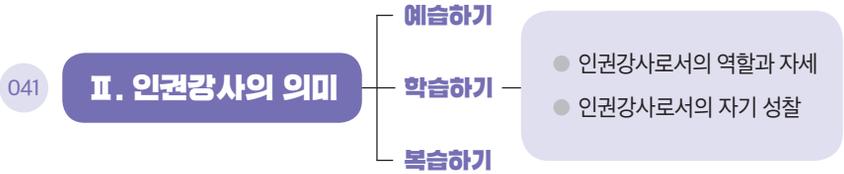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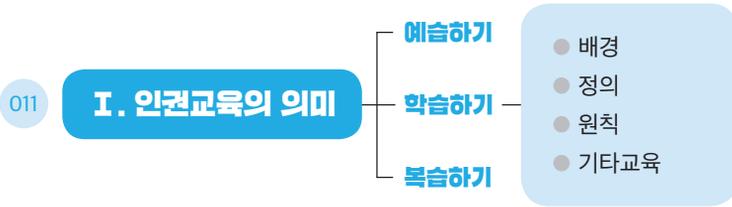
「인권강사 양성과정 워크북 2」 활용안내

- 이 워크북은 각 주제마다 [예습하기-학습하기-복습하기]로 구성되어 단계별 정리가 가능합니다.
- 각 주제별 예습하기와 복습하기의 [메모일]을 기입하여 학습 일에 따른 생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워크북은 각 주제마다 [빈칸]을 작성하면서 주요 내용을 학습 및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목 차

004 ○ “인권을 위한 강사”

005 ○ 「인권강사 양성과정 워크북 2」 제작 목적 및 활용안내



083

IV. 인권교육의 평가

예습하기

학습하기

복습하기

- 만족도조사
- 모니터링

095

부 록

인권교육 준비 체크리스트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113

○ 참고자료

포 목차

<표 1> 유엔 인권교육 관련 결의문 목록	016
<표 2> 인권교육의 의무를 명시한 법률	019
<표 3> 인권교육 활동 원칙	023
<표 4> 각 분야별 법정 의무교육 현황	028
<표 5> 학대예방교육 관련 법률	030
<표 6>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률	032
<표 7> 인성교육진흥법	035
<표 8> 인권강사로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가 보완할 영역	045
<표 9> 인권강사로서의 자기 성찰 목록	048
<표 10> 인권교육계획서 양식(예시)	059
<표 11> 참여형과 강의형 비교	065
<표 12> 교육 후, 자기평가 목록	077
<표 13> 만족도 조사 문항 작성해 보기	088

I. 인권교육의 의미



[목표]

인권교육의 의미를 알아보고,
인권교육의 목표와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인권교육의 의미

예습하기

메모일 20 년 월 일

인권교육은 '인권을 교육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과 방식이 다양합니다. 또한, 인권교육에 대한 기준이나 요건 등이 모호하여 그 범위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몇 차례¹⁾ 인권교육과 관련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였지만, 특정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권교육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인권의 정의가 명시된 것처럼, 현재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조례, 규정 또는 유엔 문서 등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2018. 10. 8. 인권교육지원법안 발의 철회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발표



검색영역	'인권교육의 뜻' 찾아보기
 규정	<p>※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인권교육'을 검색해 보세요.</p>
 웹	<p>※ 다양한 포털 웹사이트에서 '인권교육'을 검색해 보세요.</p>
 협약	<p>※ 유엔문서나 국제인권협약 중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검색해 보세요.</p>
 기타	<p>※ 인권단체 누리집 등에서 '인권교육'을 검색해 보세요.</p>

인권교육의 의미

학습하기

1. 인권교육의 배경

가. 국제적 배경

인권교육은 ‘인권’과 ‘교육’의 단순한 조합을 넘어 고유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인권교육은 그 자체가 권리이면서, 인권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마중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권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인권교육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1990년대 초입니다.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지만,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미비했습니다. 그러다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인권교육은 유엔의 주요 의제로 등장합니다.

이에 1990년 12월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세계인권대회의 개최와 준비위원회 설립을 결의하였고, 이후 4차례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1993년 6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세계인권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총 171개 회원국과 수많은 비정부기구 활동가들이 참여한 이 대회는 국내 민간단체 회원 21명으로 구성된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세계인권대회²⁾ (1993년 6월 14일 ~ 6월 25일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들은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으로 채택되어, 전 세계적으로 인권 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각 정부가 인권교육을 촉진 및 장려하도록 ‘인권교육 10년 선포’를 유엔이 고려할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D. 인권교육

82. (중략) 유엔 내 자문 및 기술지원프로그램은 각 국(정부)의 인권 분야 교육과 훈련 활동뿐 아니라 군대·법집행담당자·경찰 및 보건 전문가와 같은 특수집단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권조약과 인도주의법 등의 기준에 대한 특별교육 요구에 즉각 응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며, 집중하도록 ‘유엔 인권교육 10년 선포’를 고려해야 한다.

2) 사진 출처 : 유엔 사진 디지털자산관리시스템(UN Photo Digital Asset Management System)

세계인권대회는 다양한 공동체가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증진하는데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 명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유엔은 1994년 12월 ‘인권교육 10년 선포’ 결의안을 채택하여,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각 정부가 인권교육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작성한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 결의안은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문서의 초석이 되어, 현재까지 인권교육의 방향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표 1> 유엔 인권교육 관련 결의안 목록

- | | |
|-----------|---|
| 1994년 12월 | 유엔총회는 결의문(49/184)을 통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을 ‘유엔 인권교육 10년’으로 선포함 |
| 1995년 12월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유엔 인권교육 10년’ 선포에 따른 행동계획을 마련하였고, 이는 유엔총회에서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 결의문으로 채택됨
(참고 - 강사양성과 훈련의 필요성도 언급됨) |
| 2004년 2월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의 성과 및 미흡한 사항과 이 분야에 있어서의 향후 유엔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E/CN.4/2004/93)’를 발표하고, 인권교육을 위한 국제적 체제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함 |
| 2004년 12월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마련한 ‘유엔 인권교육 10년’에 대한 후속조치(‘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선언’ 포함) 결의안(E/CN.4/2005/98)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후, 초등·중등교육제도에 초점을 둔 1차 행동계획 ³⁾ 을 확정함 |

2010년 7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2차 행동계획(2010년~2014년) 결의안을 유엔총회에서 채택하고,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과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인의 인권훈련을 위한 행동계획에 대해 규정함
2011년 12월	유엔총회는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A/66/457)'을 채택하여, 모든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인권교육훈련을 강화할 것을 당부함
2014년 8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3차 행동계획(2015년~2019년)은 1, 2차 프로그램의 이행을 강화하고, 언론인과 미디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촉진에 대해 규정함
2019년 7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4차 행동계획(2020년~2024년)은 인권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규정함

이처럼 1994년 이후 유엔은 인권교육과 관련한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채택하여, 각 회원국들이 인권교육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유엔의 주제별 특별절차 중 '교육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이 있어, 인권교육 및 교육권과 관련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유엔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 유럽평의회를 비롯한 에퀴타스⁴⁾나 국제엠네스티와 같은 국제단체 등도 여러 인권교육 자료들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3) 2005년~2009년 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은 당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이었으나 인권이사회의 결의(결의 6/24, 2007)를 통해 1차 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함

4) 국제인권교육센터 에퀴타스(Equitas)와 국제엠네스티 등은 인권교육 툴 키트를 개발하여 누리집에 일부 내용을 보급하고 있으며,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에퀴타스와 MOU를 체결함

나. 국내적 배경

국내에서 인권교육은 1990년대 초반 인권단체들이 설립되고, 인권운동과 교육이 병행되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후, 교정·경찰·검찰 등 법 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인권교육은 학교·군대·행정 및 사회복지분야 등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본격화됩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의 법제화’를 추진과제로 선정한 후,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2007년 ‘인권교육법’ 제정을 추진하였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고, 제18대, 제19대, 제20대에서도 각각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지만, 결국 무산되어 지금까지 인권교육과 관련한 법률은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는 일부 종교단체의 거센 반발로 인해 입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 개별 법률과 조례나 지침 등은 인권교육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초는 2008년 3월 「정신보건법」이 개정될 당시 인권교육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신보건법」 제6조의2에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는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될 때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표 2> 인권교육의 의무를 명시한 법률

2008년 3월	「정신보건법(현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제6조의2(인권교육) 조항 신설
2011년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제20조(인권교육)
2012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2015년 5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2017년 10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제6조의3(인권교육)

이처럼 개별 법률마다 인권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전문강사에 대한 요구도 확대되었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매해 워크숍이나 연수 형태로 운영하던 강사 양성과정을 2015년 위촉제도로 전환하여 2016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인권을 존중, 보호 및 실현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공공기관·학교·사회복지시설 등의 재직자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추진해왔다면, 인권·시민단체는 장애인·청소년·여성 등 당사자들의 자력화를 위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인권교육도 그 자체가 권리라는 것

을 알리며,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강사양성과정 등은 이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데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인권교육만 확대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교육, 안전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학대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이 추가되는 상황에서 공공 및 사회복지분야의 재직자들은 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중적 확산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일부 평생교육과정으로 인권교육을 개설한 곳도 있지만, 인권교육이 특정 분야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2. 인권교육의 정의

국내외 문서마다 인권교육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인권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중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1차~4차)」은 인권교육을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1차부터 4차까지 다소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지식을 공유하고, 기술을 전수하며, 태도의 형성을 통해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구축(building a universal culture of human rights)하는데 목적을 둔 교육, 훈련, 정보 전달”을 인권교육으로 정의합니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1차~4차 공통)」

인권교육은 다음과 같은 지식의 공유, 기술의 전수, 태도의 형성을 통해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 교육, 훈련, 정보 전달로 정의된다.

- (a)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
- (b) 인격과 인간 존엄성을 완전히 발전시키는 것
- (c) 모든 국민, 선주민(indigenous), 인종·국적·민족·종교·언어 집단 내에서 이해(understanding), 관용(tolerance), 성평등(gender equality), 우애(friendship)를 증진시키는 것
- (d) 법에 의해 통치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 모든 사람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e) 평화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
- (f)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것

이처럼 유엔 문서뿐 아니라 국내 문서에도 인권교육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2015년 6월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 제2조

1. 인권교육 :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 능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 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 활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서 정의하는 인권교육은 「세계인권 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보다 구체적이며, 실천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내용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등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교육을 의무화한 것과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외 인권교육의 정의는 여러 학자와 국내외 인권단체마다 견해 차이를 보이는데, 그만큼 인권교육이 포괄적이며 정형화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하기보다 다양한 정의로부터 도출되는 공통의 핵심 요소를 찾아보는 것도 인권교육의 의미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의 핵심 요소” 찾아보기

※ 다양한 인권교육의 정의를 살펴보고,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핵심 요소들을 정리해보기 바랍니다.

3. 인권교육의 원칙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대상이 누구인지, 이들에게 필요한 인권적 역량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하는지 등 하나씩 설계하다 보면, 간혹 그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에 인권교육을 준비하고 실행할 때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명시된 ‘인권교육 활동 원칙’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원칙을 자신의 언어로 점검하는 방식은 인권교육 준비 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즉, 참여자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 준비한 영상이나 그림이 때로는 참여자 중 일부를 비하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 깊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표 3> 인권교육 활동 원칙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1차~3차 공통)」

C. 인권교육 활동 원칙(Principles for human rights education activities)

(a)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개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의 보편성·불가분성·상호의존성·상호연관성을 증진한다.

<나의 언어로 점검하기>

- 참여자들은 내가 준비한 내용, 사례를 통해 인권의 보편성을 이해하여 실천할 수 있다.
- []
- []

(b)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인종, 성, 언어, 종교, 정치 혹은 다른 견해, 국적, 민족 혹은 사회적 출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 등 그 외 사유에 의한 차별을 반대하도록 장려한다.

<나의 언어로 점검하기>

- 내가 준비한 사례, 동영상 등이 인종 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은 아닌지 충분히 검토하였다.
- []
- []

(c) 정치, 사회, 경제, 기술, 환경 분야의 급변하는 상황에 비추어 빈곤, 폭력 분쟁, 차별 등 고질적인 인권문제와 새로운 인권문제들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여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응과 해결책이 나오도록 한다.

<나의 언어로 점검하기>

- 참여자들은 내가 준비한 내용, 사례를 통해 빈곤은 고질적인 인권문제이며, 빈곤 문제의 해결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 []
- []

(d) 개인과 공동체가 자신의 인권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나의 언어로 점검하기>

- 참여자들은 내가 준비한 내용, 사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알고, 국가를 향해 주장할 수 있다.
- []
- []

(e) 특히 정부 공직자 등 의무이행자(duty-bearer)가 관할권 하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시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개발시킨다.

<나의 언어로 점검하기>

- 참여자들은 내가 준비한 내용, 사례를 통해 의무이행자로서 역할을 분명히 알고, OOOOO를 실천할 수 있다.
- []
- []

(f) 다양한 문화적 맥락안에 내포되어 있는 인권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자국의 역사적, 사회적 발전 정도를 고려한다.

<나의 언어로 점검하기>

- 참여자들은 내가 준비한 내용, 사례를 통해 문화적 우월주의로 인한 인권문제를 이해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다.
- []
- []

(g) 지역, 국가, 국제인권기구, 인권보호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하고 지식을 기른다.

<나의 언어로 점검하기>

● 참여자들은 내가 준비한 내용, 사례를 통해 국내외 권리구제제도를 알고, 인권침해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다.

- []
- []

(h) 인권에 관한 지식, 비판적 분석과 행동기술을 포함하여 학습자의 나이,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참여적 교수법을 사용한다.

<나의 언어로 점검하기>

● 65세 이상 참여자들이 보기 쉽도록 큰 글씨로 준비하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로 구성하였다.

- []
- []

(i) 참여, 인권의 향유, 온전한 인격의 발달을 고취시키고 결핍과 공포가 없는 교육 및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나의 언어로 점검하기>

● 참여자들이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도록 각 참여자들에게 종이를 나누어 줄 것이다.

- []
- []

(j) 학습자를 인권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에서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대화에 참여시킴으로써 인권을 학습자의 일상적인 삶과 연관을 갖도록 한다.

<나의 언어로 점검하기>

- 참여자들의 하루일과를 분석해 보고, 그 중 인권과 밀접한 사례를 찾아 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 []
- []

4. 인권교육과 기타 교육

군, 경찰, 공무원, 학교 및 사회복지기관 재직자 등은 매해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근무형태나 업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인권교육을 비롯하여 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소방훈련·교육, 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성교육 등 챙겨야 할 교육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그 근거가 법률, 조례, 지침 등 산발적이면서도 교육내용이 중복될 때가 있어,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표 4> 각 분야별 법정 의무교육 현황

군	기본권(인권)교육, 자살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부패방지교육 등
경찰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부패방지교육 등
교직원	인권교육(교육청 조례 등), 장애인식개선교육, 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장애인 학대·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4대폭력예방교육, 부패방지교육, 인성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다문화교육, 안전교육 등
공무원	인권교육(지자체 조례 등),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부패방지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사회복지기관 재직자	인권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장애인 학대·성범죄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소방안전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영유아 보육시설 재직자	장애인식개선교육,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안전 사고예방교육, 응급처치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일반 사업체 재직자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이 중 교육 참여자들이 인권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학대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인성교육 등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질문 속에는 너무 많은 의무교육으로 힘들다는 뜻을 담았을 수도 있지만, 비슷한 교육을 왜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는지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각 분야별 법정 의무교육의 목록과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각 해당 기관들의 협의를 통해 개선할 사항이므로,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권강사는 인권교육과 다른 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참여자들이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인권교육’

인권교육과 다른 의무교육을 비교할 때, 법정 의무교육의 범주로 볼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권교육 등 여러 교육이 의무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참혹한 사건·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대책으로 의무교육을 도입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권교육의 정의와 별개로 인권교육을 의무화한 개별 법률에서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당 교육의 이행 여부만 점검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으므로,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인권교육과 기타 교육들은 그 내용이 유사해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 인권교육과 학대예방교육

“인권교육과 학대예방교육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



<표 5> 학대예방교육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21. 12. 2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중략)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중략)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2020. 12. 29.>

아동, 노인, 장애 분야 재직자들이 받고 있는 학대예방교육의 목적은 학대를 예방하는 것과 신고 의무자로서 이행할 사항을 전달하는데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학대를 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으므로, 인권교육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주제로 다룰 때는 학대에 관한 내용을 일부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직자를 가해자로, 이용인을 피해자로 단정 짓는 방식은 인권을 위한 교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조하거나, 위반 시 징벌과 손해배상이 따를 수 있다는 적지 않은 위협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교

육도 참여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인권의 규범과 원칙 및 가치에 기반하여 학대의 의미를 알고, 예방의 필요성을 느끼며,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태도와 실천에 대해 충분히 다룰 수 있다면, 학대예방교육도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인권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

“인권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



<표 6>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률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12.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29.>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인권교육은 성별, 나이, 장애, 인종, 국적, 가족 형태 등 무수히 많은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을 설득하므로,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식개선교육도 ‘장애’라는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은 인권교육과 유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라는 정체성을 비장애인으로부터 이해받아야 하는 것처럼 만듭니다.

이미 법정 의무교육으로 명시되어 있어 교육대상과 명칭은 바꿀 수 없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인권 규범과 가치에 기반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인식개선교육에서 우선되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다. 인권교육과 인성교육

“인권교육과 인성교육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



<표 7> 인성교육진흥법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9.>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인권교육과 인성교육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어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는 인성교육의 목적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성교육은 공동체를 위한 ‘나’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인권교육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존엄, 자유, 평등 및 연대를 생각하는 교육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성교육은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목표로 두고 있어, 권리보다는 각 개인의 태도와 자세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인권을 알면 이기적으로 변한다고 하지만, 이는 인권에 대한 오해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30조는 공동체 내 상호존중의 의무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나의 권리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정확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을 수도 있지만, 인권을 아는 것은 오히려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권교육과 기타 교육을 간단히 비교한 이유는, 가능한 모든 교육이 인권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갈 때, 인권 존중 사회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은 인권교육을 학습, 교육, 훈련, 정보 전달 등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성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법정의무교육이 많은 상황에서 인권교육인가 아닌가라는 논쟁보다 인권교육의 핵심 요소들이 모든 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권교육의 의미

복습하기

메모일 20 년 월 일

지금까지 인권교육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은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을 통해서 원문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1차부터 4차까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목표, 원칙, 요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 복습하기

1993년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은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인권교육 10년 선포’에 대해 제안하였다.

[]
[]

유엔 ‘인권교육 10년’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이며,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작성한 행동계획은 인권교육의 국제 기본문서이다.

[]
[]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 정의한 인권교육의 목적은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
[]

국내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서 인권교육을 정의하고 있으며, 인권존중사회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다.

[]
[]

‘인권교육 활동 원칙’ 중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

[]
[]

인권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유사성도 있지만, 인권교육은 장애인을 대 상화하지 않으며, 보편성에 기반한 교육이다.

[]
[]

II. 인권강사의 의미



[목표]

인권강사의 의미를 알아보고,
인권강사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설명할 수 있다.

인권강사의 의미

예습하기

메모일 20 년 월 일

인권교육을 하는 사람을 인권강사 또는 인권교육가라고 부릅니다. 그 표현이 어떠한든 인권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이나 역할 등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을 인권강사라 부르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기관이나 단체마다 차이가 있고, 인권강사에 대해 총론적으로 정리한 국내외 문서도 없어 인권강사의 의미와 역할이 아직까지는 모호한 상황입니다.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인권강사를 양성해온 흐름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단계별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초창기 인권위는 각 분야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인권강사 워크숍이나 연수과정을 실시하였는데, 2002년도 인권위 강사단 구성을 보면 법조계 39명, 학계 60명, 시민단체 3명으로 지금의 강사단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현재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 그 만큼 인권강사의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권강사양성과정을 통해 인권강사의 의미를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권강사양성과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가 생각하는 인권강사의 의미를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권강사란?

인권강사의 의미

학습하기

1. 인권강사로서의 역할과 자세

2015년 인권강사 위촉제도를 도입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강사양성과정을 기본, 전문, 심화과정으로 세분화하고, 각 과정마다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해 각 과정별 교과목은 조금씩 변경되었으나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인권강사로서의 자세, 역할’과 같은 과목은 현재까지 필수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인권위 강사양성과정에서 다루었던 해당 과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제2조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설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은 인권교육의 구성요소이지만, 인권강사가 갖추어야 할 역할과 자세의 지침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에 대한 교육’은 참여자에게 인권의 정의, 가치, 원칙, 특성, 역사, 국내 외 규범 및 권리구제 등을 알리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인권은 정말 아는 만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권교육에서 동일한 사례를 설명하더라도 강사마다 그 내용이 다른 것은 관점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알고 있는 범위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권의 가치, 원칙, 역사 등이 자

신의 언어로 정리되었을 때, 우리사회의 다양한 쟁점들을 인권의 관점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가끔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할 때면, 축하의 인사와 더불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이는 길고 긴 학습의 시간을 예고한 것이기도 합니다.



<표 8> 인권강사로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가 보완할 영역

개념영역	법률영역	국제영역
존엄 자유 평등 차별 연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존성	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기간제법, 노동3법 등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협약 조약기구
교수법영역	교안영역	기타
참여형 교수법 스피치 기술 비대면 교육	파워포인트 작성법 콘텐츠 활용법	국가의 의무 권리구제제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인권

인권을 통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은 강사를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인권교육에서 교육대상자를 참여자로 표현하는데, 이는 강사와 참여자가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전제할 뿐 아니라 강사와 참여자 간 어떤 위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강사는 상호 권리를 존중하면서 최대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반면에 강사가 참여자에게 대답을 강요하거나 억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난감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강사가 위압적 태도를 취하거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는 인권을 통한 교육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참여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면서 인권을 통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안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수법 정리하기

- 강사를 포함하여 나이, 직위, 계급에 관계없이 ‘~님’으로 호칭하기
- 참여자의 외모, 성격 등을 비하하거나 유머의 소재로 사용하지 않기
- 강사소개 시 과도하게 낮추거나 높이지 않기
- []
- []
- []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은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고 향유하며,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강사는 모든 사람의 인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의존성·상호연관성을 전달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틴 니뮐러(Martin Niemöller)의 ‘그들이 왔다’라는 글⁵⁾처럼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 나의 인권도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을 참여자들과 나누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한두 시간의 교육으로 얼마나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참여자들이 교육이 끝난 이후 인권을 자신의 삶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도 강사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을 위한 교육’을 위해 질문 만들기

- 오늘 함께 한 내용 중 직접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나의 권리를 자신뿐 아니라 누구를 위해 행사하고 싶습니까?
-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까?
- []
- []
- []

5) 「인권강사 양성과정 워크북」 1권, 60쪽 참조

2. 인권강사로서의 자기 성찰

인권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내용이나 강의기술 등 강사마다 자신이 미흡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에 시연 발표나 동료 모니터링 등 자문을 받기도 하지만, 우선 자기 ‘객관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치 영상 속 자신을 보듯, 교육 때마다 ‘강사로서 나’를 참여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의 속도·역양, 자세 및 설명 방식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인권이 체화되는 과정을 지속해야 합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의 삶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강사는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므로, 가능한 자신의 삶이 인권과 가까워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자기 성찰 목록을 확인하면서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무엇인지, 나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있지 않은지 등 교육을 준비하고 실행할 때마다 점검해 본다면, 강사로서의 역량도 높일 수 있습니다.



<표 9> 인권강사로서의 자기 성찰 목록⁶⁾

구분	목 록	확인
나의 성찰	나는 나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	
	나는 타인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가.	

6) 「인권교육 알파와 오메가」, 국가인권위원회, 46쪽~51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구분	목 록	확인
나의 성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인지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경험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거나 분류하는데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일반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말투, 억양, 크기, 추임새 등을 인지하고 있는가.	
	나의 삶과 인권이 어느 정도로 맞닿아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는가.	
	나는 타인의 삶을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가.	
	나는 스스로 충분히 이해한 후,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인권 강사로서 성찰	나는 나의 역량을 파악하여 인권교육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한 가지 이상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나는 인권에 대한 지식(개념, 원칙, 규범 등)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있는가.	
	나는 인권문제를 분석할 때 개인보다 사회구조적 원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가.	

구분	목 록	확인
인권 강사 로서 성찰	나는 타인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감과 설득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사회적 이슈, 동향 등을 포함하여 인권교육과 연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강사의 교안이나 자료를 인용할 때, 명확히 출처를 밝히고 있는가.	
	나는 인권교육에서 나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 경험의 한계성을 명확히 인지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나는 인권교육을 준비할 때, 시간·장소·대상·기자재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있는가.	
	나는 농담이나 유머를 사용할 때 나와 타인을 비하하거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외래어, 축약어, 은어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나의 교육이 평가받는 것에 거부감이 없는가.	
	나는 나의 교육에 대한 평가 결과를 충분히 참고하고 있는가.	
	나는 연대 의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인권강사의 의미

복습하기

메모일 20 년 월 일

지금까지 인권강사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은 인권강사로서 역할과 자세를 갖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인권교육을 준비하고 실천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내용 복습하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부터 강사 워크숍 등을 시작하였고, 이후 2015년 위촉제도를 도입하였다. .

[]
[]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제2조에서는 인권교육의 구성요소로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
[]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인권의 가치, 역사 등을 알리는 것이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이 필요하다.

[]
[]

‘인권을 통한 교육’은 강사와 참여자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서로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

[]

‘인권을 위한 교육’은 나의 권리를 향유하고,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참여자가 직접 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

[]

인권강사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 목록을 통해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훈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

[]

Ⅲ. 인권교육의 계획과 실행



[목표]

- 인권교육계획서와 교안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을 알아보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 인권교육 실행 시 고려할 사항을 알아보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인권교육의 계획과 실행

예습하기

메모일 20 년 월 일

인권강사는 교육을 의뢰받으면 참여자가 누구인지, 목적은 무엇인지, 장소는 어디인지 등을 확인한 후, 준비를 시작합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고 골조를 세워 다양한 모양을 갖추는 것처럼, 인권교육도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권교육을 계획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참여자 분석입니다. 참여자들의 기대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들의 개별성과 일반성을 분석하면 할수록 그 교육의 완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참여자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고, 사전조사도 쉽지 않아 일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자 분석틀을 구상하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도 교육적 역량을 높이는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학교관리자 인권리더십과정’의 ‘인권감수성’ 교육을 의뢰받았다면, 참여자를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나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여자의 개별성과 일반성을 고려한 분석 목록을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인권교육 의뢰 내용

학교관리자 인권리더십과정 안내

□ 과정 개요

과정명	교육대상 및 인원	교육방식	교육일	교육장소
학교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	초·중·고 교장·교감 30명	집합 교육	4. 16(금) 오후 2시~4시	○○ 컨벤션 센터

* 사전 사이버학습(1시간) 수강("차별금지"의 이해)



참여자 분석해 보기(예시)

영역	구분	내용
나이 학력	일반적 특성	학교관리자라면, 중장년층 이상일 것이며,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개별적 특성	정교사가 되는 과정(경험)이 각자 다를 것이며,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의 경험도 예상할 수 있다.
학생 교사 관계성	일반적 특성	
	개별적 특성	

⇒ 종합적 분석 결과(예시)

- '인성'과 '인권'의 경계에 대해 설명하기
- '우대'에 의한 차별 사례(성적·상장 등)를 넣기

인권교육의 계획과 실행

학습하기

1. 인권교육계획서 작성하기

인권교육을 준비할 때, 교육계획서 작성은 교육대상을 고려한 세부 목표, 주제,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례나 콘텐츠 등을 활용할 때도 목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물론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요에 따라 교안을 먼저 작성할 수 있지만, 인권교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강사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교육계획서 양식은 교육을 요청한 기관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유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제목, 목표, 일시, 장소, 대상, 방법, 내용, 기자재, 준비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교육일시, 장소, 대상, 기자재 등은 이미 확정된 내용을 작성하거나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인권교육계획서를 작성할 때, 제목부터 순차적일 필요는 없으며, 교육대상 분석 결과에 따라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계획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교육대상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단어나 문장이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은 반복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표 10> 인권교육계획서 양식(예시)

교육 제목			
교육 목표			
교육일시	2022년 월 일 14:00 ~ 16:00	교육장소	중회의실 <input type="checkbox"/> 강의실형 <input type="checkbox"/> 모둠형
교육대상	총 명 00기관 재직자 / 00시 산하기관 공무원		
교육방법	강의식 / 토의식 / 활동식		
교육내용	진행안	소요시간	
열기			
전개			
닫기			
교육기자재	<input type="checkbox"/> 빔프로젝터 <input type="checkbox"/> 노트북 <input type="checkbox"/> 마이크 <input type="checkbox"/> 기타		
준비물	접착식 메모지, 펜		
기타			

가. 인권교육 의뢰기관의 ‘운영계획안’ 확인하기

인권교육계획서를 작성할 때, 우선 교육을 의뢰한 기관(부서)의 ‘인권교육 운영계획안’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기관이나 시설 등은 강사료를 지급하기 위해 운영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내용을 담당자에게 물어보거나 문서로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직무연수나 훈련과정 중 인권교육이 배치된 것이라면, 해당 연수과정의 목적은 무엇인지,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준비를 위한 기초 질문

- 이번 인권교육이 처음인가요?
-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떤 주제가 있었나요?
- 혹시 이번 인권교육에서 바라는 주제나 내용 등이 있나요?
- 제가 맡은 교육 전후로 다른 교육도 있나요?
- 제가 맡은 교육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몇 번째인가요?
- []
- []
- []

나. 인권교육 참여자 분석하기

‘인권을 통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강사가 교육 참여자에 대해 충분히 아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구성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참여자를 직접 만나기 전 까지 이들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정보 제공 을 제한할 때도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자 분석틀을 고안해 보는 것도 필요 합니다.

교육 참여자 분석을 위한 질문 목록

<p>운영자와 소통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은 총 몇 명인가요? ● 의무교육인가요? 자발적 참여인가요? ● 교육 참여자의 성별, 나이 등 분포가 어떠한가요? ● 참여자의 직위, 직책, 업무 등은 어떠한가요?
<p>자료조사 블로그 SNS 누리집 도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참여자와 동일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하루 일과를 예상해보기 ● 교육 참여자들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있는지 검색해 보기 ● 교육 참여자들이 지금의 일을 하기까지 어떠한 삶의 여정이 있었을지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며 추정해보기 ● 교육 참여자 간 공통점과 차이점 찾아보기 ● 교육 참여자가 한 기관의 재직자들이라면, 이들 사이의 일상적 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구조는 무엇인지 추정해보기

인권교육의 참여자를 분석한다는 건, 한편으로 참여자에 대한 ‘관심’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시작할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궁금하듯, 인권교육도 참여자들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내용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 분석은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벗어나 그들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인권교육계획서에 직업·성별·나이 등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있지 않은지 등은 수시로 점검해야 의미있는 참여자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분명하고 간결한’ 목표 세우기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인권교육도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내용이 명료해집니다. 초중고 교과서마다 각 단원별 세부 목표가 있는 것처럼 인권교육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일회성 특강이다 보니 “인권을 이해한다”와 같은 추상적 목표를 세울 때가 많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이 인권을 모호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 교육의 목표가 불분명한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인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목표는 ‘장애인’이 제시되어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애의 개념·유형부터 성별·나이·가족관계·거주형태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어 결국, 모든 장애영역을 다루지 못하고 이슈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인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목표를 바꾸면,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어 참여자들도 심층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의 목표는 참여자의 욕구 분석을 토대로 분명하고 간결하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권교육의 목표를 설정할 때, 행동동사를 활용하면 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별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목표는 참여자 입장에서 이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차별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목표는 설명 여부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 측정이 가능합니다.



행동동사를 활용한 목표 설정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 인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알아보고, 아동인권의 의미를 참여자가 설명할 수 있다.
- 인권감수성을 높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예방할 수 있다.
 -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사례를 찾아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한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목표 설정에 있어 ‘말하다’, ‘표현하다’, ‘찾는다’와 같이 참여자가 실행할 수 있는 동사를 활용할 경우, 교육내용도 인권의 실천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즉, “참여자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한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설정하면 강사는 차별의 의미와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설명하게 되므로, 다양한 행동동사를 사용한 목표 설정은 교육대상을 분석하는 것만큼 인권교육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동동사 목록

표현하다	말하다	묘사하다	설명하다	토론하다
구분하다	판단하다	보여주다	찾아내다	정리하다
연습하다	조직하다	계획하다	준비하다	제안하다

라. 각 교육방법의 장점을 활용하기

인권교육의 방법은 참여자 분석뿐 아니라 교육인원·시간·장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지만, 강사의 계획보다 주어진 상황에 맞춰야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집합교육 중 참여형(활동형)은 인권을 체득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요구되므로, 기획단계부터 운영자와 강사 간 협의를 통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강의형은 교육인원과 시간, 공간 등의 제약이 없어 집합교육뿐 아니라 비대면교육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에 참여형 교육은 참여자와 강사 간 동등성의 확보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강의형 교육은 강사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자칫 참여자와 강사 간 위계 형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표 11> 참여형과 강의형 비교

구분		내용
참여형	긍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경험할 수 있음 ● 편견과 선입견 등이 집단 구성원의 비판적 탐색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 참여자 중심의 교육 운영이 가능하고, 문제해결 역량을 갖출 수 있음
	검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2~3시간 이상 확보가 필요하며, 공간에 따라 인원도 조정이 필요함 ● 참여자의 이동성, 활동성 등 미리 확인하여 자리배치, 동선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여러 돌발상황(참여자 간 의견 충돌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 ●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며, 일부는 이탈(미참여)할 가능성도 염두해야 함
강의형	긍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장소, 인원에 관계없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음 ● 빔프로젝터나 TV, 마이크 등이 있는 환경이라면 특별한 사전 준비가 요구되지 않음 ● 참여자들이 발표 등의 부담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음

구분		내용
강의형	검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의 개별성이 존중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음 ● 강사의 지식, 역량 등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음 ● 강사가 설명 중심으로만 교육할 경우, 참여자 스스로 문제 해결력을 갖기 어려움

또한, 참여형과 강의형의 구분 없이 교육대상과 목표에 따라 여러 방식을 혼합하기도 합니다. 교육방법이 형식상 강의형일지라도 간단한 게임이나 토론을 병행하여 참여자의 활동을 보장하거나, 온라인 실시간 투표나 협업 도구(패들렛, 슬라이도, 멘티미터, 비캔버스, 퀴즈앤 등)들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외 워크숍이나 연수 형태로 운영될 경우 역할극, 브레인스토밍, 현장견학, 캠페인 등의 활동과 연계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인권교육도 등장하고 있어, 앞으로 더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참여자와 강사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도입과 긴장완화방법 아이스 브레이킹 단어게임, 이름게임	체험 기반 방법 역할극, 모의법정 개인의 경험	참여/대화형 방법 토론, 대화 논쟁, 경청	갈등해결방법 중재, 협상, 조정
발표방법 강연보고서	인권교육의 방법과 기술⁷⁾		분석 및 내용해석방법 텍스트 또는 사진분석 해설
창조적 방법 에세이쓰기, 그림그리기 모형만들기, 사진, 비디오, 학생신문			행동방법 캠페인, 응원편지 플래쉬몹, 자원활동
자료수집방법 브레인스토밍 질문지, 인터뷰, 관찰	연구방법 사례연구, 현지조사	IT기반, 소셜미디어방법 온라인리서치 등	마무리방법 공동의 활용 요약 전시 등

마. 교육일시와 장소 참고하기

대부분 교육대상 및 시간·장소 등을 확정된 후, 인권교육을 의뢰하므로 강사는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교육을 계획해야 합니다. 때로는 교육 당일의 날씨가 영향을 미칠 때도 있어, 고려할 사항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육시간은 법정 의무교육을 제외하고, 최소 1시간부터 4시간까지 다양하며, 워크숍이나 연수 과정일지라도 한 과목을 4시간 이상 배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인권교육을 계획할 때 교육일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전, 오후에 따라 참여자의 반응이 다를 수 있고, 특히 점심 이후나 퇴근 직전 상

7) '인권의 이해 : 인권교육을 위한 핸드북', 국가인권위원회, 2019, 706쪽

황에서는 참여자의 집중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여러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일시 참고하기

- 출근 직후 교육이면, 마음열기로 무엇이 좋을까?
- 월례회의 전후 교육이면, 직장 내 갈등 사례를 통해 인권의 방향을 안내해볼까?
- 점심시간 직후 교육이면, 동영상이나 간단한 게임을 활용해볼까?
- 금요일 오후라면, 쉬는 시간을 조정하여 종료시간을 조정해볼까?
- []
- []
- []

교육장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학교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공공영역은 회의실, 강당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는 교실, 과학실, 체육관, 강당, 식당 등 상황에 따라 다르며, 사회복지기관은 프로그램실, 회의실, 강당 등이 있으나 거주시설의 경우 거실이나 휴게실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근무 공간을 벗어나 교육을 받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근무 중 회의실이나 강당 등에 모여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교육이 확대되면서 공간의 분리없이 교육을 받기도 하여, 인권교육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인권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인 해결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교안 작성하기

인권교육은 교수법과 관계없이 대부분 파워포인트로 교안을 준비합니다. 파워포인트는 표·그림·사진·도형 및 동영상 등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므로, 활용 정도에 따라 참여자들이 주요내용을 이해하고 집중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권강사마다 교안을 작성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큰 범주에서 유사한 면이 있고, 국내외 인권규범이나 특정 분야의 법률, 규정, 규칙과 같은 내용은 각 교안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인권강사양성기관이나 단체에서는 표준교안을 제작하여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대상의 면밀한 분석과 목표 없이 표준교안을 활용한다면, 그 전달성과 효과성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의 목적에 따라 잘 구성된 교안은 참여자들을 위한 보조강사가 되기도 하지만, 교안이 너무 화려해서 강사의 메시지가 묻히거나 지나치게 밋밋하여 강사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들도 인권교육의 실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콘텐츠

교안을 작성할 때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교육 목표에 적합한 콘텐츠를 찾는 것입니다. 콘텐츠는 교안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을 의미하지만 실제 교안을 작성할 때는 이미지, 그림, 사진, 동화, 동영상, 영화 등 교육 참여자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비대면교육으로 전환되면서 미디어 콘텐츠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각각의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배치하여 구성할 것인가는 참여자의 특성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템플릿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면 다양한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강사가 직접 제작하거나 배경없이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템플릿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은 참여자와 시간, 장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즉, 나의 시선보다 참여자의 시선으로 2~3시간 파워포인트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 시각적으로 편안한지, 밝기 정도와 강약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등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 장소에 따라 밝기 정도는 어떻게 할까?
- 참여자 입장에서 무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중 무엇이 적절할까?
- 시각적 전달력이 높은 것은 무엇일까?

다. 글씨체와 이미지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제2조에서는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안을 작성할 때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즉 교육장에서 사용하는 교안은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으면서도 참여자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일 시력이 낮은 참여자가 있다면 글씨의 크기가 더 커져야 할 것이고, 한글이 낯선 참여자가 있다면 그들의 언어와 그림을 담아야 합니다.

교육장마다 참여자와 스크린(TV 등) 간 거리는 다양합니다. 글씨, 이미지 등 크기나 형태는 교육장의 넓이와 비례할 때 전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간혹 교육장의 넓이와 간격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 맨 뒷자리의 참석자가 소외되거나 스크린이나 TV가 작동되지 않아 난감할 때도 있으므로, 사소한 부분이지만 사전에 확인해 둘수록 교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글씨체가 전달력이 높을까?
- 이미지는 어느 정도의 크기가 적정할까?
- 글씨와 이미지를 어떻게 배치할까?
- 슬라이드마다 글씨체를 통일할까? 다르게 할까?

라. 동영상

인권교육 교안에 삽입하는 동영상은 그 용도에 따라 재미, 감동, 공감, 성찰,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인권에 기반한 해석을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미로 활용한 영상이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면 이것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만일 설명할 수 없다면 사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동을 주기 위해 사용한 영상이 인권보다는 연민이나 동정,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영상은 인권교육에서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영상을 사용한다면 참여자의 성별, 나이, 피부색, 종교, 가족상태 등에 따라 불편한 사람이 있을까?
- 나는 이 영상을 통해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 만일 참여자 중 내가 준비한 영상을 본 적이 있다면, 어떻게 설명을 보완할 수 있을까?

3. 인권교육 실행하기

인권교육의 실행은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참여자와 함께 나누면서 참여자 분석과 목표 설정이 적합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강사로서 준비한 내용이 잘 전달되어 보람을 느낄 때도 있지만 모든 교육이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권강사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참여자들을 만날수록 경험이 쌓여 현장대응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여자의 직업이나 직책 등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이 생기기도 하므로, 인권강사로서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험의 빈도보다 인권적 관점을 견고히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 도입

인권교육은 실제 참여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하지만, 최소 10~30분 정도 미리 도착하여 교육장에 모인 참여자들의 표정이나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해

분위기를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이 시작된 이후 노트북이나 빔프로젝터 등의 오작동은 교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기자재와 준비물 등은 사전점검을 해둬야 합니다. 특히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할 때는 화면공유, 마이크·스피커 상태, 인터넷 연결의 안전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집합 교육에서 기자재로 인한 돌발상황 시 강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비대면 교육에서 이러한 문제는 교육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전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을 시작할 때 “모두 잘생긴 분들이 오셨네요”, “모두 최고인 분들이 모이셨군요”와 같은 표현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하다”라는 인권의 핵심 가치를 전달해야 하는 강사가 외모와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분하여 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교육에서 도입 영역은 강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교육의 핵심 목표를 안내하고, 참여자들이 인권교육의 의미를 알며, 호기심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참여자들이 인권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도입의 주요한 기능입니다.



- 최소 10~30분전 교육장에 도착하기
- 기자재, 마이크, 준비물 등 점검하기
- 참여자들의 표정, 대화 등을 통해 분위기 파악하기
- 참여자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인사를 나누고, 인권교육의 의미 전달하기

나. 진행

도입에서 참여자들의 마음을 열었다면, 진행은 목표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과정입니다. 이에 강사는 참여자들의 표정이나 눈빛 등을 관찰하면서 말의 속도와 어조 등을 조절하고,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참여자 분석의 오류로 인해 준비한 내용이나 사례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휴식시간을 통해 교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과 소통하며 그들이 궁금해하거나 질문한 내용을 교육의 주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을 진행할 때, 전달할 내용이 많거나 정해진 시간보다 앞당겨 끝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참여자들의 휴식시간은 확보해야 합니다. 인권을 교육하는 시·공간은 항상 인권에 가까운 환경이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권교육은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생각하기’, ‘바꾸기’를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교육내용이 무겁거나 피로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휴식시간을 통해 환기해 보는 것도 참여자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에서 진행 영역은 교육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만, 사례나 그림, 동영상 등이 인과관계없이 나열만 되고 있지 않은지 인식하면서 설명되어야 하고, 모든 콘텐츠를 종합했을 때 결론적으로 참여자들이 기억할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 참여자들의 반응이나 수용도를 고려하면서 말의 속도나 어조, 설명방식을 유연하게 조절하기
- 45~50분마다 휴식시간 배치하기
- 참여자들이 질문이나 의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다고 알리기
- 참여자 중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때 잘 경청하기
- 참여자의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때 답변이 어렵거나 모르는 사항은 솔직하게 인정하며 대처하기
- 말할 때마다 ‘어’, ‘으’, ‘저기’와 같은 추임새를 반복하여 참여자의 집중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기
- 교육의 흐름상 주제가 바뀔 때마다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전달하기
- ‘인권을 통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기

다. 마무리

인권교육을 진행할 때 시간을 자주 확인하지 않으면, 마무리 할 시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명하다가 갑자기 5분 이내로 마쳐야 할 상황이 되면, 답답한 마음에 말이 빨라지고 스스로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급함은 강사만 느끼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참여자 입장에서는 강사의 서두르는 모습에 집중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입-진행-마무리에 대한 시간 배분은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술입니다.

또한, 인권강사로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을 마친 후, 자기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평가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교육장에서 발견한 자신과 학습자의 태도,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을 의미합니다. 인권교육을 준비할 때 참여자 분석에서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하나씩 반영하다 보면 강사로서의 역할과 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표 12> 교육 후, 자기평가 목록

구분	자기 점수	개선점
준비한 교육의 목표와 내용(사례, 동영상 등) 이 교육 참여자에게 적절했는가?		
교육 및 휴식시간을 적절히 운영했는가?		
참여자의 반응을 잘 관찰했는가? 특정한 반응은 왜 발생했는가?		
교육환경은 적절했는가? 앞으로 꼭 점검할 사항은 무엇인가?		
교육 운영자와 소통이 원활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구분	자기 점수	개선점
나의 언어나 태도에 개선점은 무엇인가?		
<참여자 질문 및 특이사항>		
<hr/>		

인권강사가 계획한 내용이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들의 삶과 업무에 얼마나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는 바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권 강사를 만난 사람들은 분명 인권이라는 작은 씨앗을 품게 됩니다. “인권교육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앞으로 더 의미있는 인권교육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의 계획과 실행

복습하기

메모일 20 년 월 일

지금까지 인권교육의 계획과 실행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진 틀에 갇힐 수 있으므로, '인권을 통한 교육'과 '인권을 위한 교육'인가를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내용 복습하기

인권교육계획서는 참여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 목표와 내용을 구성할 때, 전달력을 가질 수 있다.

- []
- []

인권교육을 계획할 때, 행동동사를 활용하여 목표를 설정할 경우 구체성과 실천성을 높일 수 있다.

- []
- []

참여형, 강의형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알아보고, 장점을 모아 활용할 수 있다.

- []
- []

교안 작성 시 참여자의 입장에서 템플릿, 글자체, 그림 등의 크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

[]

교안은 강사와 참여자를 적절히 연결해 주는 보조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

[]

교육 시작부터 종료까지 일관성, 통일성을 갖추었을 때, 전달력이 높을 수 있다.

[]

[]



IV. 인권교육의 평가



[목표]

인권교육 평가의 의미를 알아보고,
인권교육에서 설문지의 활용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인권교육의 평가

예습하기

메모일 20 년 월 일

인권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에서 평가는 중요합니다. 교육은 그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없어 평가를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을 찾아 보완해 나갈 수 있으므로, 교육에서 평가는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써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의 평가는 대부분 '참여자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족도 설문지', '평가서', '평가설문지' 등 여러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참여자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진행한 인권교육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강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또는 참여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최근에 들었던 교육을 떠올리며 설문 문항을 작성해보기 바랍니다.



설문 문항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번에 참여한 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해 만족합니까?					
인권강사에 대해 만족합니까?					
인권교육을 진행한 방법에 대해 만족합니까?					
오늘 강의를 진행한 강사를 다른 분에게도 추천하겠습니까?					



만족도 중심의 설문 문항이
인권강사와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인권교육의 평가

학습하기

교육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언제,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교육 참여자가 평가서를 작성했을 때, 참여자마다 인권교육이 처음인지 아닌지, 인권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등은 보이지 않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를 작성한 시간이 쉬는 시간인지 종료 시간인지, 평가방식이 자필인지 온라인인지에 따라서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가의 목적, 주제, 기준, 영역,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이에 부합하여 설계된 평가의 결과는 환류를 통해 인권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만족도 조사

가. 만족도 조사의 한계

인권교육에서 평가는 대부분 '만족도 조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이 끝나면, 교육 담당자가 참여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수거하거나 온라인 설문주소를 공지하여 취합하는데,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강사 중 일부는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이 결과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정작 참여자들은 설문지를 작성하면서도 그 결과는 제공받지 못할 뿐 아니라 나의 평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만족도 조사 결과의 비공개성은 참여자와 강사를 포함하여 인권교육의 개선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그 결과는 대부분 인권교육의 운영 여부나 강사 섭외에 활용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가끔 강사에게 만족도 조사 결과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참여자들이 어떤 이유로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않았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만족도 조사의 내용이 '만족' 여부를 묻는 것이므로, 그 설문지를 작성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강사를 포함하여 과정 전반에 대한 인상평으로 작성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족도 조사 방식은 강사를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참여자의 평가를 의식하여, 해야 할 말을 못한다거나,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거나, 불편할 것 같은 내용은 아예 다루지 않는 등 인권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보편적인 인권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써, 단 한 번의 교육이라도 사람들이 인권적 태도를 갖추고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려면 평가방식을 인권교육의 연장선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만족도 조사의 활용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족도 조사 방식은 기관마다 의견이 다르고 아직 공론화된 상황도 아니므로,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활용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인권교육을 의뢰한 곳의 담당자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몇 가지 문항만 바꾸어 실시해도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표 13> 만족도 조사 문항 작성해 보기

설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오늘 참여한 인권교육에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 (예시) 오늘 교육은 인권의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해 만족합니까?				
→ (예시) 인권에 대한 내용이 알기 쉽게 전달되었습니까? →				
인권교육을 진행한 강사에 대해 만족합니까?				
→ (예시) 강사의 언어, 태도 등이 인권적으로 느껴졌습니까? →				

설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권교육의 진행방법에 대해 만족합니까?				
→ (예시) 오늘 교육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이나 제안 등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				
오늘 인권교육을 다른 분께도 추천하겠습니까?				
→ (예시) 오늘의 교육이 인권적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				

이처럼 인권교육의 만족도 조사 문항을 구체적으로 바꾸면, 강사가 보완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참여자도 인권적 역량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모니터링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강사가 자신을 직접 모니터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여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설명방식은 적정한지 등은 만족도 조사 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교육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임무이기도 하며, 보편적인 인권문화가 정착되려면 체계적인 인권교육도 병행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인권교육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은 그 목적에 따라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인권교육이 실제 진행되는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분석할 경우,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세밀한 면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즉 참여자 반응, 강사의 태도나 자세, 교육환경 등을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강사는 매우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니터링을 ‘누가’하였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그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가. 교육 참여자를 통한 모니터링

모니터링을 교육 참여자에게 요청한다면, 강사가 준비한 교육내용이나 교수법이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사의 언어나 태도가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알아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니터링의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은 여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인권교육을 몇 번 받았는지, 직업이나 직책은 무엇인지, 강사에 대한 호감도는 어떠한지 등이 모니터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니터링을 위한 참여자의 선정 기준이나 방법은 그 목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나. 동료 인권강사를 통한 모니터링

모니터링을 동료 인권강사에게 요청한다면, 매우 섬세한 부분까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자들과 인사하는 방법이나 강의하는 자세, 화법, 교안의 흐름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동료 강사로부터 점검받는다는 부담이 작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동료 강사가 어떤 원칙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그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료 강사 모니터링 시 서로가 잘 알고 있어 비판적 관점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그 결과를 수용하는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항목을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 전문가(기관)을 통한 모니터링

외부 전문가(기관)를 통한 모니터링은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므로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정 의무교육, 공공영역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다면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의 질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외부 전문가(기관)에게 모니터링을 요청할 때, 소요비용의 확보와 더불어 모니터링을 요청한 목적, 기준, 방식 등은 상호 소통하며 구체적으로 설계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인권교육을 기획한 담당자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느낌이나 인상평보다는 여러 평가 항목을 활용하여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가 기대하는 인권강사의 역할이 인권의 원칙이나 가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부 록



인권교육 준비 체크리스트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인권교육 준비 체크리스트⁸⁾

범주	교육접수단계 점검목록	확인
자기 분석	내가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교육인지 확인하기 교안이나 준비 사항 등 동료로부터 피드백 받기	
목표 분석	의뢰받은 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확인하기	
참여자 분석	참여자에 대한 분석(연령, 성별, 직업, 하루 일과, 삶의 이력, 선행 교육 경험, 참여자의 삶에서 핵심적인 인권 이슈, 교육 욕구, 교육 자발성 정도, 참여자 상호간의 관계 등) 진행하기	
교육 환경 분석	교육 공간, 시간, 참여 인원, 위치 등 환경적 요소를 파악하여 필요한 부분 조정하기	
	교육 참여자 중 관리직, 임원 등의 참여 여부와 갈등 구조 등을 미리 파악하여 조처하거나 교육에 반영하기	
준비 상황 분석	참여자에 대한 안내문, 누리집 게시물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참여자의 욕구나 기대 등 파악하기	
	교육 시 강의 평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설문 문항의 개선을 요청하기	
	교육 진행에 필요한 준비물과 공간 배치 등을 미리 확인하기	

8) 인권교육 알파와 오메가, 국가인권위원회, 2020, 46~48쪽의 내용을 재구성

번주	교육기획단계 점검목록	확인
내용 적합성	교육 목표와 핵심 메시지를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간결하게 설정하기	
	인권에 대한 내용(지식, 정보 등), 인권적인 태도와 기술, 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적절히 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설정된 목표와 핵심 메시지, 근거 등이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참여자의 삶이나 해당 분야의 현장, 사회에 존재하는 인권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구성하기	
	인권침해의 원인을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에 두지 않고, 구조적 분석(침해의 구조나 권력관계, 심리사회적 배경,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연대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	
	교육내용의 사례로 최근의 동향, 제도적 변화, 쟁점 등을 포함하여 현재성을 확보하기	
	교육내용 중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내포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방법 적합성	도입에서 동기를 유발하거나 편안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음열기 내용을 배치해 보기	
	참여자의 다양성(장애, 성, 연령, 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료나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기	
	참여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비판적 사고의 확장, 스스로 문제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나 활동을 배치해 보기	

범주	교육기획단계 점검목록	확인
교육 구조화	도입-전개-마무리를 흐름 있게 배치하고, 맥락에서 벗어난 이야기 없이 내용적 유기성을 확보하기	
	정보나 지식만 나열하지 않고, 질의응답, 교육내용의 요약과 정리 등 균형 있게 배치해 보기	
	특정 사례를 일반화하거나 특수화하지 않고, 하나의 사례 안에 담긴 보편적 함의와 참여자와의 연결고리를 발견하도록 구성해 보기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유엔 총회는

인종, 성별, 언어, 종교 등의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영역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과 증진 및 개선에 대한 유엔 헌장(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의 본 취지와 원칙을 재천명하며,

또한 모든 개인과 사회 조직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시키고자 학습과 교육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재천명하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교육은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온전한 발전을 지향해야 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은 자유로운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국가, 인종, 민족, 종교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우애 나아가 평화, 안보 유지 및 개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유엔 활동을 증진시킬 것을 재천명하며,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기타 인권조약 등에 규정된 바대로 국가는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함에 책임을 갖고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을 재천명하며,

인권교육훈련이 인권 증진과 보호 그리고 효과적 실현에 이바지함으로써 인권교육훈련의 근본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국가 제도, 법령 등에 인권, 인도주의법,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라는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⁹⁾의 요청을 재확인하고 인권에 대한 보편적 책무성 강화를 기대하며 공동의 이해와 인식을 성취시키고자 인권교육에 평화, 민주주의, 개발, 사회정의 등의 사항 뿐 아니라 향후 국제적, 지역적 인권제도에 관한 사항 또한 포함돼야 함을 명시하며,

9) A/CONF.157/24 (Part I), chap. II, para. 79.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orld Program on Human Rights Education)의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여 국가와 정부의 지도부는 국정 입안, 실행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인권교육과 학습의 증진을 지원하고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개발해 줄 것을 모든 국가에 권고한 바 있는 2005년 세계정상회의(2005 World Summit)의 결과¹⁰⁾를 상기하며,

모든 이해당사자의 집결된 책임에서 인권교육훈련의 모든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세계 인류 공동체에게 강력히 강조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

1. 모든 사람은 자신이 향유할 수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알고 청구하고 인정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인권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권교육훈련은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등의 인권 원칙에 따라 모든 이의 인권의 보편적 존중과 기본적 자유 수호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3. 모든 권리의 효과적 향유, 교육권과 정보 접근권은 인권교육훈련에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제2조

1.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의 증진과 수호를 목표로 하는 교육, 훈련 정보, 인식개선, 학습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그 중 인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인권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이해하여 인권친화적 행동의 발달을 통하여 인권침해와 학대를 예방하고 보편적 인권문화를 구축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다.
2. 인권교육훈련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 (a) 인권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 인권에 관한 지식 제공, 인권 기준 및 원칙의 이해, 인권보호의 토대가 되는 가치관과 인권보호체계 등에 관한 사항

10)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1.

- (b)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인권교육은 교육자와 학습자 양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교수법이어야 하며 이런 방식의 교육과 학습 등에 관한 사항
- (c)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고 향유하며,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

제3조

1. 인권교육훈련은 전 연령층을 포괄하는 평생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인권교육훈련은 전 사회분야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학령기전, 초중고등 등을 포함하여 학문의 자유가 허용되고 적용할 수 있다면 공교육이던 사교육이던 형식적이던 비형식적이던 비정규이던 상관없이 모든 교육과정에서의 모든 형태의 인권교육, 훈련, 학습 등을 포함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직업훈련, 특히 교육자, 교원, 국가공무원, 평생교육, 시민교육, 공공정보, 감수성 훈련 활동 등 모든 영역의 교육훈련현장에서 인권교육훈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 인권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 집단의 개별적 욕구와 여건을 고려하고 해당 집단에게 익숙하고 적절한 언어와 교수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제4조

인권교육훈련은 세계인권선언과 관련 국제인권조약 및 문서 등의 인권원칙을 토대로 하여 아래와 같은 관점을 갖고 있어야 한다 :

- (a) 인권에 관한 보편적 기준과 원칙 더 나아가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보장할 것
- (b) 모든 사람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자유와 평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화합과 개인의 발전을 함양시킬 수 있는 보편적 인권 문화를 발전시킬 것
- (c) 모든 인권의 효과적 실현 추구 및 관용, 반차별, 평등을 진작시킬 것
- (d) 어떤 차별도 받지 않으며 양질의 인권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동등한 인권교육훈련 기회를 보장할 것

- (e) 인권교육훈련은 인권침해와 학대 예방에 이바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 인종주의, 편견과 집단적 혐오를 자극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및 이 모든 사항에 기반이 되는 유해한 태도와 편견 등과 싸워 근절시킴에 기여할 것 ;

제5조

1. 인권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이 공공 행위자이든 민간행위자 이든 평등, 존엄, 화합 및 반차별 등과 같은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하며 특히, 소녀와 소년,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은 중요하다.
2.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과 활용이 가능해야 하고 배제 또는 소외 등의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고 역량강화와 인간적 발달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포함하여 취약하고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개인과 집단이 직면하고 있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어려움과 장애물 및 욕구와 기대를 고려해야 한다.
3. 인권교육훈련은 인권의 보편성을 반영해야 하듯이 서로 다른 국가의 문명, 종교, 문화, 전통 등이 갖고 있는 다양성에서 영감을 얻을 뿐 아니라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하고 풍부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사람의 인권의 성취라는 공동 목표에 대한 소유의식 고취를 위하여 지역사회내의 인권교육훈련 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상이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

1. 인권교육훈련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 등을 이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2. 예술 등은 인권분야에서의 훈련과 인식증진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1. 국가 및 해당 관련 정부기관은 참여, 통합, 책임의식 속에서 인권교육훈련의 개발, 실행, 증진, 보장의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
2. 국가는 해당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보호될 수 있는 인권교육훈련에 시민사회, 민간부문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위하여 안전하고 합법화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3. 국가는 입법적, 행정적 수단 및 정책의 적용을 포함한 적절한 수단에 의해 진보적인 권교육훈련 수행을 최대한으로 가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자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내적 혹은 국제적 지원 및 협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국가 및 해당 관련 정부기관은 관료, 공무원, 판사, 법집행관, 인도주의법, 국제형사법 등의 교육을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교사, 훈련담당자, 기타 교육자 및 국가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현장 활동가 등을 위한 적절한 인권교육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8조

1. 국가는 적절한 수준에서 인권교육훈련의 전략 및 정책을 개발하거나 이러한 개발을 진작해야 하고 적절할 경우 학교교육 과정에 인권교육훈련 내용 통합 등을 통하여 인권교육훈련이 이행될 수 있는 행동계획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거나 개발을 권장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과 해당 당사국 및 지역적 욕구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이러한 전략, 행동계획, 정책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계획, 실행,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는 민간영역,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기구 등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 다수의 이해당사자의 사업추진 증진을 통하여 이러한 작업들이 가능하다.

제9조

국가는 국가인권기구가 필요할 경우 조정의 역할을 포함하여 인권의식 고취를 통하여 인권교육훈련을 증진하고 관련 공공 및 민간 활동가를 동원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파리원칙(the Paris Principles)을 준수하여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발전, 강화에 노력한다.

제10조

1. 다양한 사회 활동가들 중 특히, 비정부기구, 인권옹호자, 민간부문 등을 포함한 교육 기관, 대중매체, 가족, 지역공동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인권교육훈련을 증진하고 제 공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

2. 시민사회기구, 민간영역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는 해당 기관 소속 직원과 간부들에게 적절한 인권교육훈련을 보장할 것을 장려한다,

제11조

유엔과 국제 및 지역기구들은 임명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 군인, 경찰 등에게 인권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1. 모든 수준에서의 국제협력은 인권교육훈련을 이행하고자 지원하고 국가적 노력을 강화하고 적절할 경우 지역적 수준에서의 지원과 노력의 강화 또한 가능해야 한다.
2.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지자체의 수준에서 상호보완적이고 통합된 노력은 인권교육훈련의 효과적 수행에 공헌할 수 있다.
3. 인권교육훈련 분야의 연구계획 및 사업을 위한 자발적인 자원 조달은 권장되는 바이다.

제13조

1. 국제 및 지역 인권기구는 해당 기구에 위임된 범위 안에서 인권교육훈련을 자체 업무로서 고려해야 한다.
2. 적절할 경우, 국가는 관련 인권기구에 제출할 보고서에 본 당사국이 인권교육훈련 분야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제14조

국가는 본 선언의 효과적인 이행 및 사후관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원을 가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16 February 2012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9 December 2011
[on the report of the Third Committee (A/66/457)]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The General Assembly,

Welcoming the adoption by the Human Rights Council, in its resolution 16/1 of 23 March 2011,¹¹⁾ of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1. Adopts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annexed to the present resolution;

2. Invites Governments, agencies and organiza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and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intensify their efforts to disseminate the Declaration and to promote universal respect and understanding thereof, and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include the text of the Declaration in the next edition of Human Rights: A Compil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89th plenary meeting
19 December 2011

11) See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y-sixth Session, Supplement No. 53 (A/66/53), chap. I.

Annex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The General Assembly,

Reaffirming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ith regard to the promotion and encouragement of respect for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Reaffirming also that every individual and every organ of society shall strive by teaching and education to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Reaffirming further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at education shall be directed to the full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and the sense of its dignity, enable all persons to participate effectively in a free society and promote understanding, tolerance and friendship among all nations and all racial, ethnic or religious groups, and further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security and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Reaffirming that States are duty-bound, as stipulat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¹²⁾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¹³⁾ and in other human rights instruments, to ensure that education is aimed at strengthen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2) Resolution 217 A (III).

13) See resolution 2200 A (XXI), annex.

Acknowledging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in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ffective realization of all human rights,

Reaffirming the call of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held in Vienna in 1993, on all States and institutions to include human rights, humanitarian law, democracy and rule of law in the curricula of all learning institutions, and its statement that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include peace, democracy, development and social justice, as set forth in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in order to achieve common understanding and awareness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universal commitment to human rights,¹⁴⁾

Recalling the 2005 World Summit Outcome, in which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supported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learning at all levels, including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encouraged all States to develop initiatives in that regard,¹⁵⁾

Motivated by the desire to send a strong signal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trengthen all efforts i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a collective commitment by all stakeholders,

Declares the following:

Article 1

1. Everyone has the right to know, seek and receive information about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should have access to human rights education
2.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is essential for the promotion of universal

14) See A/CONF.157/24 (Part I), chap. III, sect. II.D, paras. 79 and 80.

15) See resolution 60/1, para. 131.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universality, indivisibility and interdependence of human rights.

3. The effectiv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in particular the right to educat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enables access to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Article 2

1.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comprises all educational, training, information, awareness-raising and learning activities aimed at promoting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thus contributing, inter alia, to the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by providing persons with knowledge, skills and understanding and developing their attitudes and behaviours, to empower them to contribute to the building and promotion of a universal culture of human rights.
2.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encompasses:
 - (a) Education about human rights, which includes providing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norms and principles, the values that underpin them and the mechanisms for their protection;
 - (b) 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which includes learning and teaching in a way that respects the rights of both educators and learners;
 - (c) Education for human rights, which includes empowering persons to enjoy and exercise their rights and to respect and uphold the rights of others.

Article 3

1.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is a lifelong process that concerns all ages.
2.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concerns all parts of society, at all levels, including preschool, primary,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taking into account academic freedom where applicable, and all forms of education, training and learning, whether in a public or private, formal, informal or non-formal setting. It includes, inter alia, vocational training, particularly the training of trainers, teachers and State officials, continuing education, popular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and awareness activities.

3.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use languages and methods suited to target groups, taking into account their specific needs and conditions.

Article 4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relevant treaties and instruments, with a view to:

- (a) Raising awareness,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univers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principles, as well as guarantees at the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b) Developing a universal culture of human rights, in which everyone is aware of their ow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respect of the rights of ot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individual as a responsible member of a free, peaceful, pluralist and inclusive society;
- (c) Pursuing the effective realization of all human rights and promoting tolerance,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 (d) Ensuring equal opportunities for all through access to quality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without any discrimination;
- (e) Contributing to the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and to the combating and eradic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racism, stereotyping and incitement to hatred, and the harmful attitudes and prejudices that underlie them.

Article 5

1.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whether provided by public or private actors,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s of equality, particularly between girls and boys and between women and men, human dignity, inclusion and non-discrimination.
2.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be accessible and available to all persons and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particular challenges and barriers faced by, and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persons in vulnerable and disadvantaged situations and groups,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promote empowerment and human development and to contribute to the elimination of

the causes of exclusion or marginalization, as well as enable everyone to exercise all their rights.

3.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embrace and enrich, as well as draw inspiration from, the diversity of civilizations, religions, cultures and traditions of different countries, as it is reflected in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4.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take into account differen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ircumstances, while promoting local initiatives in order to encourage ownership of the common goal of the fulfilment of all human rights for all.

Article 6

1.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capitalize on and make use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s well as the media, to promote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 The arts should be encouraged as a means of training and raising awarenes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rticle 7

1. States, and where applicable relevant governmental authorities,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promote and ensure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a spirit of participation, inclusion and responsibility.
2. States should create a safe and enabling environment for the engagement of civil society, the private sector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i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in which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all, including of those engaged in the process, are fully protected.
3. States should take steps, individually and through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to ensure, to the maximum of their available resources, the progressiv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by appropriate means, including the adoption of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and policies.
4. States, and where applicable relevant governmental authorities, should ensure adequate training in human rights and, where appropriat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 of State officials, civil servants, judges,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military personnel, as well as promote adequate training in human rights for teachers, trainers and other educators and private personnel acting on behalf of the State.

Article 8

1. States should develop, or promote the development of, at the appropriate level, strategies and policies and, where appropriate, action plans and programmes to implement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such as through its integration into school and training curricula. In so doing, they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specific national and local needs and priorities.
2. The conceptio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nd follow-up to such strategies, action plans, policies and programmes should involve all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civil society an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by promoting, where appropriate, multi-stakeholder initiatives.

Article 9

States should promote the establishment,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effective and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Paris Principles”),¹⁶⁾ recognizing tha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cluding, where necessary, a coordinating role, in promoting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by, inter alia, raising awareness and mobilizing relevant public and private actors.

Article 10

1. Various actors within society, including, inter alia,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media, families, local communities, civil society institutions, includin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uman rights defenders and the private sector, have

16) Resolution 48/134, annex.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promoting and providing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2. Civil society institutions, the private sector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are encouraged to ensure adequate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ir staff and personnel.

Article 11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should provide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ir civilian personnel and for military and police personnel serving under their mandates.

Article 12

1.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all levels should support and reinforce national efforts, including, where applicable, at the local level, to implement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2. Complementary and coordinated efforts at the international, regional, national and local levels can contribute to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3. Voluntary funding for projects and initiativ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be encouraged.

Article 13

1.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should, within their respective mandates, take into account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ir work.
2. States are encouraged to include, where appropriate, information on the measures that they have adopted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ir reports to relevant human rights mechanisms.

Article 14

States shoul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nd follow-up to the present Declaration and make the necessary resources available in this regard.

「인권강사 양성과정 워크북 2」 참고자료

이 워크북의 주요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참고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누리집에서 원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가나다순

- 공공분야 인권강사양성 현황 실태조사, 2020
- 공무원 인권교육 길라잡이, 2018
- 국가인권위원회 20년사, 2021
-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인권의 이해, 2018
-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세계인권선언의 이해, 2018
- 유엔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2018
- 인권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개발연구, 2021
- 인권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 2016
- 인권교육 기본용어, 2020
- 인권교육의 알파와 오메가, 2020
- 인권교육 평가를 위한 지표 교재 개발 연구, 2019
-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관련 연구, 2011
- 인권 길라잡이, 2017
- 인권의 이해 : 인권교육을 위한 핸드북, 2019
- 인권 첫걸음, 2015

인권강사 양성과정 워크북 2

인쇄일 2022년 7월 15일 초판 1쇄발행
2023년 7월 24일 2쇄발행

저자 모든사람

발행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운영과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리키움 저동빌딩 우) 04551

전화 (02)2125-9890 FAX (02)2125-0917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인쇄처 디자인모장 (02)2278-1990

I S B N 1권: ISBN 978-89-6114-893-1 94370

2권: ISBN 978-89-6114-894-8 94370

세트번호: ISBN 978-89-6114-892-4 94370



ISBN 978-89-6114-894-8 94370

978-89-6114-892-4 94370(세트)